양주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로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19. 03. 01. ~ 2020. 02. 29.

○ 가입절차 : 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양주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로 보험가입 혜택

담보사항	보장금액	보장내용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 ~ 5급 10,000,000원 한도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0,000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해	20,000,000원 한도	-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	20,000,000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대중교통 이용시 후유장해	20,000,000원 한도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포함
강도 상해 사망	20,000,000원	강도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0,000원	실퍼도 사랑하기다 3%~100%의 성에 부규정에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 유괴·납치·인질(1일당)	100,000원	만13세~18세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경우 (90일 한도)
미아찾기 지원금	1,000,000원	만8세이하 어린이가 미아 신고 후 1개월 지난 경우 ※ 3개월경과시 200만원 추가 지급
의료사고 법률비용	20,000,000원 한도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0,000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자전거사고 사망	10,000,000원	자전거 운전 중,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0,000원 한도	-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이상: 200,000원 5주이상: 300,000원 6주이상: 400,000원 7주이상: 500,000원 8주이상: 600,000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 7일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20,000,000원 한도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0,000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0,000원 한도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 시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 지역 제한 없음(양주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도 보상 가능)
- ※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전기자전거 등은 지급 제한
-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로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문의 전화 : 보험사 통합 콜센터 1522-3556, 양주시 안전건설과 031-8082-6745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는?

-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5. 여객수송용 선박

○ 강도에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 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 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미아찾기 지원금

- ▶ 보험기간 중에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 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3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미아상태라 함은 길을 잃음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는 상 태를 말하며 유괴, 납치로 인한 실종은 제외합니다.

○ 의료사고법률비용

- ▶ 의료사고법률비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사고라 함은?
 -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과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 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1. 태풍 2.홍수 3.호우 4.강풍 5.풍랑 6.해일 7.대설 8.낙뢰 9.가뭄 10.지진11.황사 12. 조류대발생 13.조수 14.화산활동 15.일사병 및 열사병(T67.0)
- ③ 제2항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